

#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연월일	2022. . .
발 의 자	김정도 의원 외 12명

#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정도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2. . . .

발 의 자 : 김정도 · 김근한 · 김낙관 · 김영태  
김원섭 · 김재우 · 김춘남 · 박교상  
신용하 · 양진오 · 이명희 · 정지원  
허민근 의원(13명)

## 1. 제안이유

- 가. 사회변화에 따라 청년 기본 조례의 목적 강화 및 정의 변경
- 나. 청년정책위원회의 정비를 통해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 다. 지원사항을 확대·강화하여 청년의 권익증진에 기여

##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규정(안 제1조 ~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안 제3조 ~ 4조)
- 다. 청년정책 기본·시행계획 및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7조)
- 라.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정책참여단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15조)
- 마. 청년의 권익증진 관련 사항(안 제16조 ~ 제30조)

## 3. 조례안: 붙임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청년기본법」, 「청년기본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에서 거주·생활하고 있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정책 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권익증진과 청년 행복 도시 조성 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청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고용 확대, 권익 증진, 능력 발전 등을 목적으로 구미시장이 추진하는 시책을 말한다.
3.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참여 보장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자율성과 공익성 등에 가치를 둔 활동을 말한다.

4. “청년지원”이란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년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등 청년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및 활동지원을 말한다.
5. “청년단체”란 청년정책 및 청년지원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청년공간”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발전과 공정한 기회 보장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청년정책 및 청년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청년정책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개정할 때 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2장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

제5조(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구미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 사항

가.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청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의 청년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

다. 청년의 고용촉진 및 창업지원

라. 청년의 생활 및 주거안정

마.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바. 청년 공간 마련 및 운영

사. 청년의 권리보호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 민·관 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시의 주요시책과 연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구미시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청년정책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① 시장은 청년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청년의 고용·생활·교육·문화·여가 등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을 통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3장 청년정책위원회

제8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구미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청년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위원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총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과 제3항에 따른 청년 연령의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일자리, 문화, 복지, 주거 관련 국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구미시의회 의원

나. 청년취업 및 청년창업 관련 전문성이 있는 사람

다.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라. 청년 문화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청년

마.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바. 그 밖에 청년 연령의 공무원이나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3. 건강 등 개인적 사정으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2회
2. 임시회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 ⑥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⑦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청년정책참여단)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수립·시행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청년을 육성하기 위하여 구미시 청년정책참여단(이하 “참여단”이라 한다)을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참여단에서 수렴된 의견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청년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와 참여단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장 청년의 권익증진

제16조(청년 행사 등 개최) 시장은 청년정책의 활성화와 청년들의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하여 교육, 공모전, 홍보 이벤트 등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청년의 시정참여 기회 확대) ① 시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캠페인·토론회·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청년의 능력개발) 시장은 취업애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과 취업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청년의 고용촉진 및 창업지원) ① 시장은 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외·사회부적응·구직 청년 등 취약계층에 있는 청년의 자립 및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지원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창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 환경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에 있는 청년노동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청년의 생활 및 주거안정) ① 시장은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 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활안정 지원 방안에는 결혼, 보육, 보건, 안전 등의 지원이 포함된다.

④ 시장은 청년의 주거수준 및 주거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의 전월세 보증금 등 용자지원사업
2. 청년가구의 임대료 지원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년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제21조(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 시장은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을 위한 교육과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청년의 문화예술 활성화) ① 시장은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청년의 권리보호)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청년의 건강증진) 시장은 청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경제적 이유 등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5조(청년미취업자 지원대책 수립 등) 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을 위한 지역산업 맞춤형 교육훈련, 직업지도, 취업알선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제적 경험을 갖춘 우수한 청년인재를 양성하고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취업 등 다양한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6조(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등) 시장은 청년정책 목적달성 및 청년활동 지원을 위해 청년공간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단체와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청년지원 관련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교육·캠페인·토론회·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

## 성화를 위한 사업

2. 청년의 능력·재능·기술개발을 위한 훈련비 지원사업
3.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지역 청년문화 활성화 사업
5.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방법, 절차 등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9조(포상) 시장은 청년권익 증진에 공로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새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관계법령

### □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 □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청년의 날) ①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은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이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무총리는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청년정책과 관련된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의 청년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3. 청년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간 청년정책의 균형 있는 발전에 관한 사항
5. 청년정책에 관한 정보 공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③ 국무총리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 구미시 청년 기본 전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 청년정책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청년 행사, 청년의 주거안정 및 건강증진 등 청년의 권익증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재정소요가 예상됨

(안 제7조, 안 제16조, 안 제19조, 안 제20조, 안 제21조, 안 제24조, 안 제25조)

###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함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미첨부 사유

- 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세부사업계획 수립 후 추진할 사항으로 예산의 소요는 예상되나 구체적인 재정의 추계는 어려우며, 청년의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사업, 청년 행사 등의 예상 비용은 연평균 1억원 미만임

### 4. 작성자

- 청년청소년과 청년정책계 이임섭(054-480-2702)